

(무역계약론 제14주차)

제 2 장 매도인의 의무

CISG 제3편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기본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매도인의 기본적인 의무는 ① 물품인도의무 ② 서류의 교부의무 ③ 소유권 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매수인의 기본적인 의무에는 ① 대금지급의무 ② 인도수령의무 ③ 물품검사 및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3편제5장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의무로 손실경감의무(제77조), 면책사유통지의무(제79조), 계약해제로 인한 대금반환 시의 이자지급의무(제84조), 물품보관의무(제85조,제86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의무는 매매계약 자체에서 발생하는 의무가 아니고 일방당사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효과로서 부수되는 의무이다.

□ 서류인도 및 소유권 이전의무(제30조)

제30조

매도인은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하며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계약과 CISG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에게 ①물품의 인도 ②서류의 교부 ③소유권 이전을 이행해야 한다. 소유권이전에 대해서는 각국의 법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소유권이전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정지의 국제사법규칙에 따라 적용될 준거법에 따른다.¹⁾(제4조(나)호)

물품인도의무는 소유권 이전의무와는 별개의 의무이므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이 인도되지 않았으면 매도인은 여전히 물품인도의무를 부담한다. 특정물매매의 경우 그 특정물을 인도하면 되고, 불특정물매매의 경우 계약에서 정한 물품과 일반적으로 성질상 같은 종류의 물품을 인도하면 된다.

제 1 절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

1. 인도의 장소와 방법(제31조)

1) UNCITRAL,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008, p.92.

제31조

매도인이 물품을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매도인의 인도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매매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물품을 제1운송인에게 교부하는 것.

(나) (가)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계약이 특정물에 관련되거나 또는 특정한 재고품에서 인출되는 불특정물이나 제조 또는 생산되는 불특정물에 관련되어 있고, 당사자 쌍방이 계약 체결시에 그 물품이 특정한 장소에 있거나 그 장소에서 제조 또는 생산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것.

(다) 그 밖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시에 매도인이 영업소를 가지고 있던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것.

1) 계약서에서 인도장소를 정한 경우

당사자자치의 원칙이 우선하므로, 제31조는 당사자들이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²⁾ 계약서에서 인도장소를 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장소에서 인도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서에서 인도장소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물품운송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다.(제31조)

실제 대부분의 무역거래는 Incoterms를 따르고 있고, 이 경우 Incotermss가 CISG 보다 우선 적용된다.³⁾ 이런 면에서 CISG 제31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2) 계약서에서 인도장소를 정하지 않은 경우

(1) 매매계약이 물품운송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제31조(가)호)

매매계약이 물품운송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제1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물품인도의무를 다한 것이 되며, 제1운송인(first carrier)에게 물품을 현실적으로 인도한 장소가 인도장소가 된다.

제1운송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인도의무를 다한 것이 되기 때문에 다른 명시적 합의가 없는 한, 물품을 목적지에서 인도하거나 또는 물품을 매수인이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은 요구되지 않는다. 한편, 여기서 운송인이란, 단순히 운송주선만 하는 운송중개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2) 매매계약에서 물품운송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제31조(나)호)

매매계약에서 물품운송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물은 그 물품이 있는

2) UNCITRAL,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008, p.94.

3) UNCITRAL,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008, p.94.; 김상만, “Incoterms 2010이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CISG 상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 및 서류인도의무에 대한 고찰”, 통상법률, 통권 제102호, 2011, p.129.

장소(특정한 재고품에서 인출되는 불특정물이나 제조 또는 생산되는 불특정물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조 또는 생산되는 장소)가 인도장소가 되며, 매도인이 그 장소에서 매수인이 처분할 수 있는 상태(at buyer's disposal)에 두었을 때에 인도의무를 다한 것으로 된다.(제37조(나)호) 다만, 당사자 쌍방이 계약체결 시에 그 물품이 있던 특정장소(특정한 재고품에서 인출되는 불특정물이나 제조 또는 생산되는 불특정물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조 또는 생산되는 장소)를 알고 있어야 한다.

매수인이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둔다는 것은 매수인이 점유취득이 가능한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도인이 점유이전행위 자체를 할 필요는 없고, 물품을 특정하고 포장하는 등 인도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매수인에게 통지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매수인이 처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3) 기타의 경우(제31조(다)호)

기타의 경우(불특정물)에는 계약체결 시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면 된다. 영업소가 2개 이상이거나 없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영업소를 정한다.

2. 물품인도에 부수하는 의무(제32조)

제32조

- (1) 매도인이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한 경우에, 물품이 하인(荷印), 선적서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그 계약의 목적물로서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을 특정하는 탁송통지를 하여야 한다.
- (2)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을 주선하여야 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운송수단 및 그 운송에서의 통상의 조건으로,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3)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에 관하여 부보(附保)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구가 있으면 매수인이 부보하는데 필요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이 물품운송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제32조에서는 제31조에 규정된 매도인의 의무 이외의 부수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수적인 의무에는 매도인의 물품특정 및 탁송통지의무, 운송계약체결의무, 운송보험에 대한 정보제공의무가 있다.(운송계약체결의무, 운송보험에 관련한 정보제공의무 등에 대해서는 Incoterms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계약서에 Incoterms의 적용을 명시한 경우 Incoterms가 CISG에 우선한다.)

1) 물품특정 및 탁송통지의무

하인, 선적서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물품이 특정되지(identified) 않은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보내는 탁송통지서에 물품을 특정해야 한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험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으며(제67조제2항, 제69조제3항), 매도인은 매

수인에게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제45조, 제74조).

2) 운송계약체결의무

매도인에게 운송계약체결의무가 있는 경우(인코텀즈에서 CPT, CIP, CFR, CIF) 매도인은 합리적인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적절한 운송수단, 통상의 조건 등)

3) 운송보험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매도인에게 운송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수인의 요구가 있으면, 운송보험부보에 필요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3. 물품인도 시기(제33조)

제33조

매도인은 다음의 시기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 (가) 인도기일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일
- (나) 인도기간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의 어느 시기. 다만, 매수인이 기일을 선택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그 밖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후 합리적인 기간 내.

매도인은 다음의 시기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 ① 인도기일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일
- ② 인도기간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의 어느 시기. 다만, 매수인이 기일을 선택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그 밖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합리적인 기간 내

(보충설명)

1. 인도기일을 2012.4.15로 정한 경우 그 날짜에 인도해야 한다.
2. 인도기일을 2012.4.30까지로 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인도해야 한다.
3. 인도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후 합리적인 기간” 내⁴⁾
 - 1) 매도인이 1회의 분할대금수령 후 2주일 후 불도저 인도(O) (스위스 판결)

4. 서류교부의무(제34조)

제34조

4) UNCITRAL,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008, p.98.

매도인이 물품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시기, 장소 및 방식에 따라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교부하여야 할 시기 전에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비용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에서 정한 시기까지 서류상의 부적합을 치유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은 이 협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1) 서류의 교부

매도인이 물품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시기, 장소 및 방식에 따라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서류의 부적합 치유(서류교부시한 전에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교부하여야 할 시기 전에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비용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에서 정한 시기까지 서류상의 부적합을 치유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은 이 협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 2 절 물품의 적합성과 제3자의 권리주장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서 정한 수량, 품질, 종류의 물품을 인도해야 하며(제35조), 권리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제41조). 전자를 '물품의 적합성', 후자를 '권리의 적합성'이라고 한다.

1. 물품의 적합성(제35조)

제35조

- (1)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 품질 및 종류에 적합하고,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지거나 포장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 (2)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은 다음의 경우에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 (가) 동종 물품의 통상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한 경우,
 - (나) 계약 체결시 매도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알려진 특별한 목적에 맞지 아니한 경우. 다만, 그 상황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술과 판단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신뢰하는 것이 불합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매도인이 견본 또는 모형으로 매수인에게 제시한 물품의 품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 (라) 그러한 물품에 대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통상의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데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지거나 포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3) 매수인이 계약 체결시에 물품의 부적합을 알았거나 또는 모를 수 없었던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부적합에 대하여 제2항의 (가)호 내지 (라)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계약에서 정한 물품의 인도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 품질 및 종류에 적합하고,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지거나 포장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2) 물품부적합의 기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은 다음의 경우에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 ① 동종 물품의 통상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한 경우 ('통상사용목적')
- ② 계약 체결 시 매도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알려진 특별한 목적에 맞지 아니한 경우(다만, 그 상황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술과 판단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신뢰하는 것이 불합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특별사용목적')
- ③ 매도인이 견본 또는 모형으로 매수인에게 제시한 물품의 품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견본품')
- ④ 그러한 물품에 대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통상의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데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지거나 포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포장')

3) 물품부적합의 면책

매수인이 계약 체결 시에 물품의 부적합을 알았거나 또는 모를 수 없었던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부적합에 대하여 상기의 ①~④에 대해 책임이 없다.

2. 위험의 이전과 물품의 적합성 판단시기(제36조)

제36조

- (1) 매도인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때에 존재하는 물품의 부적합에 대하여, 그 부적합이 위험 이전 후에 판명된 경우라도,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책임을 진다.
- (2) 매도인은 제1항에서 정한 때보다 후에 발생한 부적합이라도 매도인의 위무위반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 부적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의무위반에는 물품이 일정기간 통상의 목적이나 특별한 목적에 맞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보증 또는 특정한 품질이나 특성을 유지한다는 보증에 위반한 경우도 포함된다.

매도인은 위험의 이전시점 이전에 존재하였던 물품의 부적합성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위험의 이전시점 이후에 발생한 물품의 부적합성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다만, 위험의 이전시점에 물품의 부적합성이 존재하였다며, 위험의 이전 이후에 그 부적합성이 발견된 경우에도 매도인은 부적합성에 대해 책임이 있다.)

한편, 위험의 이전 이후에 발생한 물품의 부적합성인 경우에도 이것이 매도인의 의무 위반에 기인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책임을 진다.(예를 들어 포장을 잘못하여 위험의 이전이

후에 물품이 손상 또는 변질된 경우) 그리고 이 의무위반에는 일정기간 통상의 목적이나 특별한 목적에 맞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보증 또는 특정한 품질이나 특성을 유지한다는 보증에 위반한 경우도 포함된다.(예를 들어 품질보증기간을 12개월(또는 10만 마일)로 정한 경우 12개월(10만 마일) 이내에 물품의 부적합사유가 발생하면, 매도인은 물품의 적합성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3. 인도한 물품의 부적합 치유(제37조)

제37조

매도인이 인도기일 전에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비용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그 기일까지 누락분을 인도하거나 부족한 수량을 보충하거나 부적합한 물품에 갈음하여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물품의 부적합을 치유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은 이 협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인도기일 전에 부적합한 물품을 인도한 경우, 매도인은 인도기일 전에 부족한 수량의 보충 또는 부적합한 물품의 교환 등을 통해 부적합을 치유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이나 비용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이로 인해 매수인이 입은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

제34조에서는 서류의 부적합 치유권, 제37조에서는 물품의 부적합 치유권을 규정하고 있다.

4. 물품의 검사(제38조)

제38조

- (1) 매수인은 그 상황에서 실행가능한 단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 (2)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검사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까지 연기될 수 있다.
- (3) 매수인이 검사할 합리적인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운송중에 물품의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물품을 전송(轉送)하고, 매도인이 계약 체결시에 그 변경 또는 전송의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검사는 물품이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한 후까지 연기될 수 있다.

매수인의 물품검사의무를 부담한다. ①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그 상황에서 실행가능한 단기간 내에 검사해야 한다. ②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된 경우 매수인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까지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이 검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상황에서 매수인에 의한 목적지의 변경 또는 전송(redispatch)이 있고 매도인이 그러한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검사는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한 후까지 연기될 수 있다.(CISG 공식번역문에는 ‘매수인에 의한 목적지의 변경 또는 전송’에서 ‘매수인에 의한’이 누락되어

있다.)

5. 물품의 부적합 통지(제39조, 제40조, 제44조)

제39조

- (1)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그 부적합한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
- (2) 매수인은 물품이 매수인에게 현실로 교부된 날부터 늦어도 2년 내에 매도인에게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 다만, 이 기간제한이 계약상의 보증기간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물품의 부적합이 매도인이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한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제38조와 제39조를 원용할 수 없다.

제44조

제39조 제1항과 제4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정하여진 통지를 하지 못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50조에 따라 대금을 감액하거나 이익의 상실을 제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인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물품의 부적합을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부적합 통지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매수인이 물품을 수취하여 사용하다가 뒤늦게 물품의 부적합을 사유로 계약해제, 대금감액, 대금지급거절,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하는 경우 매수인의 행위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부적합 통지의무의 구체적인 요건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할 것

-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
- ②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을 것
 - ③ 그 부적합한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할 것
 - ④ 물품이 매수인에게 현실로 교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통지할 것(다만, 계약상의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 내)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6. 권리의 적합성(제41조~제44조)

제41조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의 대상이 된 물품을 수령하는 데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은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의 대상이 아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이 공업소유권 그 밖의 지적재산권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의무는 제42조에 의하여 규율된

다.

제42조

- (1) 매도인은, 계약 체결시에 자신이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공업소유권 그 밖의 지적재산권에 기초한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의 대상이 아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이 다음 국가의 법에 의한 공업소유권 그 밖의 지적재산권에 기초한 경우에 한한다.
- (가) 당사자 쌍방이 계약 체결시에 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전매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될 것을 예상하였던 경우에는, 물품이 전매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될 국가의 법
- (나) 그 밖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영업소를 가지는 국가의 법
- (2) 제1항의 매도인의 의무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매수인이 계약 체결시에 그 권리나 권리주장을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
- (나) 그 권리나 권리주장이 매수인에 의하여 제공된 기술설계, 디자인, 방식 그 밖의 지정에 매도인이 따른 결과로 발생한 경우

제43조

- (1)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의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제41조 또는 제42조를 원용할 권리를 상실한다.
- (2) 매도인이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 및 그 성질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제1항을 원용할 수 없다.

제44조

제39조 제1항과 제4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정하여진 통지를 하지 못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50조에 따라 대금을 감액하거나 이익의 상실을 제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권리의 적합성이 있는 물품의 인도(제41조)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의 대상이 된 물품을 수령하는 데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은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의 대상이 아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예 : 제3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물품이나, 제한물권이 설정된 물품을 인도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매매의 목적이 된 물품 관련 소유권(또는 제한물권)에 대한 분쟁으로부터 매수인을 보호하고 있다.

2) 지적재산권 침해가 없는 물품의 인도(제42조)

지적재산권에 근거한 제3자의 클레임에 대해서는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41조에 대한 특칙이다. 매도인은 공업소유권, 기타 지적재산권 등에 기초한 제3자의 권리주장이 없는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그러나 ①이러한 권리침해를 매수인이 명백히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에는 매도인은 책임이 없으며 ②그 권리나 권리주장이 매수인에 의하여 제공된 기술설계, 디자인, 방식 그 밖의 지정에 매도인이 따른 결과로 발생한 경우에도 매도인은 책임이 없다. 이는 제41조의 일반적인 권리하자에 비해 매도인의 책임을 완화하였다.

지적재산권침해 여부의 판단기준은 ① 당사자 쌍방이 계약 체결 시에 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전매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될 것을 예상하였던 경우에는, 물품이 전매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될 국가의 법 ② 그 밖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영업소를 가지는 국가의 법을 기준으로 한다.

제41조 일반적인 권리하자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인식 불필요
제42조 지적재산권 등에 의한 권리침해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인식 필요

3) 매수인의 권리의 부적합성 통지의무(제43조, 제44조)

매수인은 권리의 부적합성에 대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합리적인 기간은 제39조제1항의 내용과 동일하지만, 제39조제2항의 2년의 제척기간은 권리의 부적합 통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즉 2년이 경과했어도 합리적인 기간 내라면 권리의 부적합통지를 할 수 있다.)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1조(권리의 부적합성이 없는 물품의 인도)나 제42조(지적재산권침해가 없는 물품의 인도)를 원용할 수 없다.

매수인이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그 위반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는 대금감액청구권(제50조)과 손해배상청구권(단, 이익상실 제외)이 인정된다.(제44조)